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강대식 · 이헌승
이달희 · 윤한홍 · 박충권
이만희 · 엄태영 · 고동진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, 상속·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·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,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,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
(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)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초과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

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

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
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“상속세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	제26조(상속세 세율) ----- -----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과세표준>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세율>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억원 초과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</td></tr> </table>	<과세표준>	<세율>	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	30억원 초과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	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과세표준>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세율>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억원 초과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</td></tr> </table>	<과세표준>	<세율>	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10억원 초과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
<과세표준>	<세율>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			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																						
30억원 초과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																						
<과세표준>	<세율>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			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																						
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 · ② (생략) 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	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																						

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항에서 “최대주주등”이라 한다)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